

##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동과 ‘民’

김 인 결

### I

조선후기는 우리 역사상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변동기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축적된 이 방면의 연구 결과는 바로 이 시기에 중세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온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농민층 분해가 촉진되고, 그에 따라 기존 중세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어 갈 변혁주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이행기에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개혁·변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 세력들의 마찰이 사회 모든 부면에서 표출되어 나오고 있었다.

당시 사회의 직접생산담당자의 주요 구성부문을 이루고 있던 농민, 넓게 보아 피지배층 일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民’의 삶의 장이었던 향촌사회 안에서도 그같은 마찰은 이제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까지 단순한 보호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온 민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움직임들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의해 일정하게 제약받고 있었음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제약은 민이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할 권력기구를 확보하고 장악하기 이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시의 지주제와 신분제 그리고 그에 기초한 국가의 군현제적 향촌통제책과 공동체적 질서는 바로 그 제약의 구체적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이 기존의 향촌사회

권력기구에 새로이 참여하면서 권력구조의 성격을 변질시켜 나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제관계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는 이행기의 향촌사회 권력구조에 관한 하나의 전망을 얻기 위하여 조선후기, 특히 18세기로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의 실상을 살피고, 그 변동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피지배층으로서의 민이 도달하고 있었던 수준·단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II

약간의 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사회는 18세기를 전후하여 크게 동요하고 있었고 그것은 향촌사회 권력구조상에도 반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변동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시기(16, 17세기)의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선왕조의 향촌사회는 기본적으로 郡縣制로 편제되어 있었고 군현의 통치권은 守令에게 위임되고 있었다. 그리고 향촌사회에서의 수령권은 조선 전시기를 통하여 부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가권력 자체가 당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었던 만큼, 수령권은 중앙 집권세력과의 관계 뿐 아니라 在地士族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것이었다. 특히 수령의 권력행사는 향촌사회의 권력기구를 통해 지배계급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 시기 민은 아직 권력의 상대자로 부각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16, 17세기의 향촌사회의 권력은 재지사족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재지사족은 그들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鄉案을 모체로 한 鄉會를 수령권과의 유착·길항이라는 관계 속에서 향촌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吏·民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권력의 구체적 실현기구는 기본적으로는 留鄉所(鄉所)였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밖으로는 왕조초

기 관권을 매개로 한 집권세력과 대항하면서, 안으로는 지주적 기반의 확립과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한편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鄉吏층을 배제하고 下民을 자신의 통제하에 결속시켜 나가는 가운데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었다. 유향소복립운동, 향약실시운동 등은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예들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유향소의 치폐사실, 위로부터의 향약실시운동의 실패 등이 그 반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해결의 방향은 이후 향촌사회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재지사족들은 국가권력의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력기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촌사회 권력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는데, 鄉約 鄉規는 그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관권과의 타협(誣毀土主, 事涉官府에 대한 금지조항으로 표현)과 부세운영 문제(不謹租賦에 대한 금지조항으로 대표됨), 그리고 그 지역의 인사권의 장악을 통한 재지사족의 吏·民 통제였다고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 부세운영권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향소(品官)은 국가나 중앙집권세력에게 있어서도 그 확실한 장악이 요청되는 것이었는데 監司, 守令을 통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지만 이는 많은 한계가 있었고 수시로 京差官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통제에는 재지사족의 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역으로 이들은 나름대로의 규약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지배력을 관철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中宗代 향약실시운동 중지 이후 국가에서는 豪強品官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入居>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로 중종 38년(1543)에 이루어진 <入居節目>이 당초 목표로 한 것(公私賤容隱 武斷鄉曲豪強品官 等三條)에서 크게 확대되어 재지사족의 입장까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위와 같이 향촌사회에 있어서 '士族支配體制'가 갖추어지고 유지되었던 배경은 어떠한 것일까. 여기서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재지사족의

물적 기반인 土地와 奴婢, 그리고 軍役에서의 면제 등 제특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이 시기에는 지주제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향촌사회에서 그 주체의 중심은 재지사족이었다. 연대기에서 누누히 강조되고 있는 “今之有田地者 土族而已 村村百姓 誰有尺寸之地哉”, “百姓有無有田地者 其有田地者 唯富商大賈土族家而已”라고 하는 기록들이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비단 토지소유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토지외에 다른 중요한 물적 기반의 하나는 노비였다. 조선시대 노비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士民들에게 있어서 공히 생업의 기초가 되었지만, 특히 노비는 사족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소유에 있어서 사족이 점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明宗 9년(1554) 司憲府에서

“생각해보건대 我國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토지가 다르고 風氣가 같지 않은 까닭에 三綱五倫이 비록 中國과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그간의 制度·文爲는 부득불 중국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土族之制는 중국에는 없으나 아국에는 있으며 奴婢之法이 중국에는 없지만 아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즉 土族을 가히 폐하고 奴婢를 가히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은 저간의 사족과 노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시사를 준다.

또한 재지사족은 물적 기반의 확대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를 위해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물적 기반의 확대는 따라서 국가의 재정기반 확보라는 문제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는데, 良人의 노비화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대토지소유확대에 대한 비판이 국가의 입장에서 제기되었던 점이 그 점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는 사족의 신분적 특권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을 매개로 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각종 임시조치들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점은 체제 자체가 갖는 기본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족 지배체제는 사족들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권력기구를 장악하고 있었음에서 그 유지가 가능한 것

이었다. 앞서 언급한 향규·향약을 통한 유향소 장악, 주민통제 외에도 書院·鄉校·司馬所 등의 권력기구를 장악·이용하고 있었고 洞契를 통해 하민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통해 사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며 국가권력, 관권의 제재조치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위의 같은 체제는 18세기 이후 사회변동 속에서 서서히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체제 자체가 갖는 기본 모순이 조만간 사회전면에 노정되면서 이제 향촌사회 권력구조는 크게 바뀌어 나가게 된다.

## II

18세기 향촌사회의 권력구조 상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먼저 鄉案을 모체로 한 鄉會의 성격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17세기 이래 복구되어 나름대로의 기능을 유지해 오던 향안이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그 入錄者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추가 기록이 중지된다던가, 관(감사)에 의해 파치됨에 따라 비릇된 것으로서, 사족지배체제의 동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를 전라도 南原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원에서는 임란 후 京在所가 혁파됨에 따라 사족이 鄉權을 잡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향안이 불살라지고 鄉論이 크게 분열되기까지 하였지만, 그같은 현상은 仁祖代 사족이 중심이 되어 수습되었다. 그 과정에서 鄉父老(鄉品)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사족의 권위가 부정되지는 않고 있었다. 당시 향약을 실시하는 데 중심 인물의 하나는 李尙鑿이었는데, 그의 子 文載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간의 사정을 보여 준다.

“本府는 백리나 되는 넓은 지역이지만 土類가 심히 드물고 品官이 무려 半千이나 되어 적은 숫자로서 많은 것을 이기기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까닭에 土論이 세워지지 않고 公議가 행해지지 않아 조세요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하물며 胥吏의 간교함이 이 고을보다 심한 곳이 없어 백방으로 백성의 뼈와 살을 깎음에 있어서라. 만일 鄉射執綱자로 하여금 사론의 공의를 모아 아전들의 간활함을 억제하고 백성의 힘을 펴게 하며 太守

로 하여금 坐廟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찌 품관이라고 해서 그들을 비천하다고 탓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오면 사정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같은 남원인 崔是翁이 肅宗 38년(1712) 府使에게 보낸 다음의 書翰이 주목된다.

“昏朝(光海朝)를 거친 이래 鄉風이 크게 어그러져 몰염치하고 문자도 모르는 우매한 무리들이 鄉廳을 틀어 잡고 있었는데, 癸亥(仁祖反正) 이후에도 역시 복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前輩들이 이것을 병으로 여겨 鄉約之規를 설립하여(중략) 이 법이 행해진지 이미 백여년이 되었다. 법이 오래되면 해이해지는 것은 괴이하다 할 수 없지만(중략) 鄉約之名을 兩廳(鄉廳·作廳)이 모두 중요하고(중략) 사대부 또한 그 중독을 꺼려하여 시비에 끼어 들려 하지 않으니 마침내 향소·서리가 聯名作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서 문제는 당시 문제의 해결이 수령에게 위임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사족이 吏·鄉과 대립적인 위치에 놓인다고 하는 점이다. 당시가 良役變通論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었고, 비변사의 <양역변통절목>에 따라 里定法의 시행이 있게 되는 시기였다는 점과 관련해 보았을 때, 이전까지의 부세운영에서 사족이 소외되어 나가고 있었던 사정을 짐작하게 된다. 이 점은 역시 최시옹이 향약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약에서 부역과 환곡운영문제를 제외시킨다면 이는 향약을 실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사족의 一鄉지배기구라 할 향회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18세기 중반 전라도에서의 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던 光州에서 향안이 관에 의해 파치되고 있었던 것은 그 단적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18세기 중반(英祖 26, 1750) 東萊府使 黃景源이 <子弟衛>를 논하는 가운데 儒林子弟衛, 羽林(武士)子弟衛 다음 세번째로 鄉士(族)子弟衛에 대해 언급한 다음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릇 諸郡의 鄉士之家는 郡의 권력을 쥐고 鄉의 職을 오로지 하며 鄉의 政을 천단하여 該百里를 무단하면서 대대로 鄉首 노릇을 하니 백성들이 수령과 마찬가지로 그를 두려워 한다. 까닭에 郡人들이 밤낮으로 鄉士之籍(향안)에 들어 갈 것을 꺼리고 끝내 들어가지 못하면 서로 관찰사한테까지 가서 소송을 제

기한다. (중략) 관찰사가 혹 향적을 불살라서 鄉土之訟을 근절시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모든 군에 향사자계위를 둔다면 향적을 어찌 불살라서야 되겠습니까. (중략) 신은 鄉土之訟을 금하는 것은 가하나 鄉籍은 진실로 불살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논의는 그가 교체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향임층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향임층이 실질적으로 향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유림층과는 구별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후 향안은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유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朝廷에서는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 표방되고 있었지만, 18세기 후반 오히려 <濫陞鄉案>이라던가 <賣鄉> 등의 현상이 수령에 의해 조장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것은 사후처리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조건하에서 기존향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해져 갔다.

18, 19세기의 향회가 일반적으로 수령의 부세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같은 사정이 이후 어떻게 진전되는가 하는 점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후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守令과 밀착된 吏·鄉에게로 향권이 집중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여기에서 새로이 성장해 나오는 세력이 향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소지가 마련되는 한편, 官主導의 지배질서와 리·향의 발호가 구조화되는 점을 보게 된다.

한편 그 과정에서 사족들은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지만 族契·門契를 강화하거나 同族村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고수하고, 그같은 기반 위에서 나름대로의 연대를 구축하고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의해 향촌을 주도하고 향권을 그들의 손안에 계속 가두어 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갔다. 오히려 각 촌과 그 구성원들은 面里制의 강화에 따라 관의 깊숙한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됨을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보이는 面會·里會(洞會) 등의 기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데, 이 시기에 오면 면·리는 수취체제의 변화와 함께

그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었다. 한편 民은 아직까지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일정하게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면회·리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변화의 동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인으로서 우선 재지사족들의 물적토대의 동요, 위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부세정책 운영에 있어서의 사족의 배제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소농경영의 성장에 따른 노비의 자립, 전호의 항조, 노비도망 등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세행정에서의 사족의 배제는 오히려 이같은 민의 성장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균역법의 실시로 인해 良役이 一匹役으로 감소, 단일화됨에 따라 노비가 모두 도망하여 양반들은 그 생계가 막연해지게 되었으며, 양반에 의해 지지되어온 조선왕조는 따라서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는 ‘均役廳病國論’을 펼쳤던 18세기 후반 한 인물의 극언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8세기 중반 호적상에 나타나는 천민(특히 外居奴婢) 수의 격감현상은 당시 호적기재의 부정확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물적 기반이 취약해져 나간다는 점만으로는 사족의 향권상실의 모두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내부에는 여전히 강고한 물적 토대를 확보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갔던 존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 사족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중앙권력 또는 수령권과의 관계 및 새롭게 향권에 접근하고 있었던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부세정책의 변화는 국가가 더 이상 사족들만을 그 상대자로 택하지 않고 향촌사회의 통제책에 있어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것은 역으로 이 시기의 사회변동 속에서 민이 성장해 나오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8세기의 鄉戰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新·舊 세력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까지 그 대립은 기존의 사족들의 이해가 관철되던 각 권력기구 안에



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기 권력구조의 변동을 담아낼 새로운 향촌사회의 권력기구,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향촌사회에 있어서는 군현제의 틀 안에서 면리제가 강화되고 수령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듯한 인상만을 갖게 해 준다. 민이 자신들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나가는데는 아직도 많은 단계들은 더 넓어서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당시의 사회변동은 기존의 권력기구의 성격을 크게 변질시키고 있었고, 그것은 당시 권력구조의 변동·사족지배체제의 동요를 포착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은 조선사회가 도달하고 있었던 발전의 한 단계를 획하는 것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 IV

앞에서 우리는 16, 17세기의 향촌사회 권력구조를 살피는 가운데 그것은 수령권과의 유착, 길항이라는 관계하에 있는 것이면서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 하나의 ‘사족지배체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향안을 매체로 한 향회를 통해서 향권의 실현기구였던 향소를 통제하고 리·민을 지배하는 권력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운영원리라 할 향규·향약은 그 실현형태의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향권을 사족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때 향권이라는 것은 관권과 대립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면서도 결코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던 <事涉官府> <不謹租賦>의 문제를 사족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었고 국가에서도 역시 그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점을 말한다. 국가에서는 지방관을 통해 향촌사회를 통제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놓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시 조건 하에서 향촌사회의 지배계급과 그들의 권력기구를 매개로 하여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각종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주제가 발전하고 지배계급들의 양인침식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제반특권은 무한히 확대될 수만은 없었다.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그것은 체제 자체가 갖는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모순은 양란 이후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란의 수습과정에서 확보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재지사족은 기존체제를 복구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세 지배계급으로서의 사족이 도달한 성과이자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제 18세기 이후 사회변동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 모순은 사회전면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순은 이전 시기부터 내재되어 온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히 국가권력과 지배계급간의 갈등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 기반에는 재지사족의 물적 토대의 동요, 위축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은 역으로 그들에 의해 신분적·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소농민들(노비·전호)의 자기성장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변동에는 국가의 부세정책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변동하고 있던 경제질서, 신분계급질서 속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세정책을 총액제로 전환시키고 있었는데,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질서,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족들이 부세운영에서 배제되어 나가게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족의 기반을 위축시켰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그 위에서 영향력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앙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향촌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일향지배란 매우 곤란하였으며, 그 기구인 향회의 성격도 관의 부세행정의 자문역할로 축소되고 그들의 손에서 떠나고 있었다.

이상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향촌사회에서의 권력이 재지사족의 손을 떠나 관권과 이를 둘러싼 吏·鄕에게 집중되어감을 의미하며, 기존 사족지배체제의 동요와 권력구조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리·향에 새로운 계급이 참여하게 되는 소지가 마련되고 있었으며, 민이 일정하게 향권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도 있었다. 당시 일반 민은 권력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중세국

가의 부세체계에 있어서 탈단조직으로서의 면·리에 강하게 결속되고 있었고, 여러 무거운 부담은 자신이 체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이제 그 조직을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나가고도 있었다.

새롭게 성장해 오고 있던 사회제세력은 아직은 자신들의 권력기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권력기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향전’은 그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계급구조의 변동을 담아낼 만한 새로운 권력기구가 창출되지 않는 한, 그리고 제반중세적 특권이 폐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새로운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이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위기적 상황은 지속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중세 해체기의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실상이었다고 생각된다.

몇가지 단편적인 자료들에 기초한 이상의 설명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는 어느 한 군현의 사례로서만 취급될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향촌사회 내부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서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조선사회 각 시기의 사회구성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었는가,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의 계급구조와 사회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데 있어서도 천착이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성과들에 의하면 19세기에는 기존의 향회가 민란의 조직으로까지 발전하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사족들의 민란에서의 역할과 면·리를 단위로 하는 민의 향상적인 결집도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과의 관련성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